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3호)

관세청에서 지난 3월에 공고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 (제10조 제1항 및 별표 2)

-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품에 원산지표시 ○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포함*

*비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포함"의 내용은 세인관세법인의 개진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예고 원안(22.03.16)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인관세법인은 HS 제8708호에 원산지표시방법이 추가 되면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전용 부분품 등에 대한 예외표시 인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고란에 제8708호 외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에도 "최소포장표시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해당 내용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 (제18조 제1항)

-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 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현행	개정안
제18조(고발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부서에 고발 의뢰해야 한다.	제18조(조사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9에 따라 조사부서에 조사 의뢰해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3.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 (제6조 제1항 및 별표 1)

-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 원산지 표시를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 표시 인정
-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될 수 있는 사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 3. (생략)</p> <p>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비데오테이프,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봉인되어 판매하는 물품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div>	<p>[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될 수 있는 사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 3. (생략)</p> <p>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div>

4. 시행일자 : 2022. 5. 2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 [붙임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